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피고인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판서를 작성할 의무 등〉
■ 이견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369호)

2024. 12.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 주요내용	2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견태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2024. 8. 29.
3. 회 부 일: 2024. 8. 30.

II.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재판은 법관이 작성한 재판서에 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재판서의 작성 방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는 형사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것으로 재판을 받는 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재판서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또한 법치주의가 실질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법조문 및 재판서가 국민 누구에게나 쉽게 느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재판서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당사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의 방식으로 재판서를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개정안 주요내용

개정안은 재판서 또는 조서를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작성하도록 하고,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u><신설></u>	<u>제38조의2(재판서 등의 작성) ①</u> <u>재판서 또는 조서는 피고인이</u> <u>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u> <u>여야 한다.</u> <u>②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에</u> <u>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 대법</u> <u>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재판서 또는 조서를 다른 방식</u> <u>으로 제공할 수 있다.</u>

2.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서 작성 또는 제공 방식에 대하여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이에 따라 재판을 받는 자가 문해력이 낮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판결문을 이해하지 못하여 판결 이후의 절차 및 집행 등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는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금지) ① 공공기관 등은 장애인이 생명, 신체 또는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자신의 권리를 보호·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직무를 수행하거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허가, 신고, 인가 등에 있어 장애인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경우
2. 공공사업 수혜자의 선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거나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④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를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 및 그 소속원은 장애인이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에 참여하기 위하여 장애인 스스로 인식하고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의 제작 및 제공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임의로 집행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⑥ 사법기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의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법기관은 해당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기를 신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⑦ 사법기관은 장애인이 인신구급·구속 상태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 및 적극적인 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는 재판예규인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에서 이해하기 쉬운 판결서 작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

고,¹⁾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당사자가 정신적 장애인인 경우 될 수 있는 대로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판결문을 작성하도록 권하고 있으나, 소위 “알기 쉬운 재판서” 작성을 의무화한 법률조항은 아니므로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는 상황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개정안이 피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판결서 또는 조서를 작성할 것을 법률에 명시하고, 특히 피고인이 장애인인 경우에는 점자자료, 수어통역 등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판서 또는 조서를 다른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문해력이 낮은 사람 또는 장애인에게 평등한 사법 서비스 제공 등 사법지원을 충실히 하려 것으로써 타당한 입법조치임.

특히, 대한민국은 2008년 「UN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비준하였는데, 해당 협약에 따라 우리가 제출한 2·3차 국가보고서에 대하여 장애인권리위원회가 2022년 9월 채택한 최종견해에 따르면, 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점자, 수어, 읽기 쉬운 형태(easy read), 음성 및 화면해설 등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도록 권고한바 있음.

1)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을 위한 참고사항」

1. 판결서 작성방식의 개선의 목적과 방향 가. 판결서는 당사자를 위한 것이기도 하므로 법률전문가가 아닌 당사자도 이해하기 쉽도록 판결서에는 되도록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문장은 되도록 짧게 세분하여 간명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나. 판결서에는 형식적 기재, 중복기재, 무익한 기재등을 생략하여 그 기재에 들던 시간과 노력을 변론의 충실과 심리의 촉진에 경주한다.

「대한민국 제2·3차 병합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

사법에 대한 접근 (제13조)

30. 위원회는 이전 권고안(CRPD/C/KOR/CO/1, 제24항)을 참조하고 2020년 장애인 인권 특별보고관에 의해 발간된 ‘장애인의 사법접근권에 대한 국제원칙과 가이드 라인’과 지속가능발전목표 16.3을 상기하며 당사국에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a) 협약에 따라 모든 사법절차 단계에서 장애인의 효과적인 참여를 제한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사법적 조치와 장애인의 사법 접근을 위한 행동계획을 채택할 것.
- (b) 장애인이 다양한 측면의 법적 절차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개별화된 지원의 제공을 포함한 절차적 조정을 마련할 것.
- (c) 점자, 수어, 읽기 쉬운 형태와 음성 및 화면해설 등 사법적 절차 전반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보완 대체 정보 및 의사소통 수단을 마련하고 모든 법정 시설에 물리적 접근이 보장되도록 접근가능한 이동수단을 포함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원칙을 적용한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²⁾
- (d) 법관과 사법 종사자에게 협약에 관한 훈련을 제공하는 노력을 강화할 것.
- (e)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개별화된 지원을 마련할 것.

또한, 2022년 12월 8일 비준된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에 따르면 장애인권리위원회에 대한 개인·집단 진정제도,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직권조사권, 당사국에 대한 제안 및 시정권 등이 인정되는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를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이에 대비할 필요성도 있음을 논의에 참고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63

2) 30. The Committee refers to its previous recommendation, recalls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Access to Justice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prepared in 2020 and target 16.3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recommends that the State party:

(c) Develop alternative and augmentative means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uch as with Braille, sign language, Easy Read and audio and video transcription, for use throughout legal proceedings, apply the principle of universal design and adopt an action plan to ensure physical access to all justice facilities, including through accessible transportation;